

[별지 제5호서식]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기타 재산수입
(54 - 545)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215	292	-	357	-	65	22.3

1.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li> <li>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li> <li>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li> </ul>
---

2. 세입 개요

-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의 유입시점과 공적자금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시점의 단기 시차로 인해 일시 보유하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276	285	215	632

## 재고자산매각대

(73 - 731)

###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재고자산 매각대	-	28,256	-	30,085	-	1,829	6.5

###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 등)
  - ④ 기금의 운용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용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 세입 개요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13.2.22.)에 따라 현물로 반환 받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원 마련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	-	-	-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전입금	2,100,000	2,100,000	-	2,100,000	-	-	-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 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2. 세입 개요**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원금기준)을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지원받아 25년간 상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800,000	1,800,000	2,100,000	2,100,000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1 - 912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특별회계전입금	88,122	98,682	-	103,555	-	4,873	4.9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업예산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④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금융권 및 정부의 손실 분담이 불가피한 여건에서 정부의 지급보장하에 성장한 우체국 금융에서도 일정부분 공적자금 상환을 분담
- 2004년~2027년까지 우체국 예금·보험 평균잔액의 0.1%를 부과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84,152	85,119	88,122	96,103

기금예수금
94 - 943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6,495,616	-	8,197,270	-	1,701,654	26.2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세입 개요

- 매년 만기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국채발행자금)으로 조달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8,933,000	13,319,700	-	6,179,500

[별지 제6호서식]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b>전입금환급</b>
<b>(1171-302)</b>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1	302
명칭	금융정책	공적자금관리	전입금환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전입금환급	63,949	62,333	-	13,053	-	△49,280	△79.1

**4. 사업목적**

-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가 결정될 경우 패소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사후관리 비용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li> <li>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li> <li>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li> </ul>
--

- (추진경위) '13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계류중이던 소송의 패소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 '15년도에는 기금의 사후관리비, 법무비용 등에 사용되는 청산비용 유보금을 반환함에 따라 '20년도 중 패소가 결정되는 소송의 패소금을 상환기금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소송 수행 관련 비용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경비를 상환기금에서 지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기금관리비
(3574-2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4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금관리비	3	5	-	5	-	-	-

### 4. 사업목적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기본적인 운영경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li> <li>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li> <li style="padding-left: 40px;">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li> </ul>
--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2003.1.1.)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3~202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자산매각비
(3574-2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4	203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자산매각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자산매각비	-	141	-	127	-	△14	△9.9

### 4. 사업목적

- '13.2.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시 필요한 매각주관사 수수료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li> <li>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li> <li>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li> </ul>
--

- (추진경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111-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1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193,363	7,361,600	-	9,323,637	-	1,962,037	26.7

**4. 사업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후 동 국채발행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원금을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b></li> <li style="margin-left: 20px;">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li> <li style="margin-left: 40px;">2. 기금의 부채 상환</li> </ul>
--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6~2027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9211-84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11	842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180,849	1,270,533	-	1,064,337	-	△206,196	△16.2

### 4. 사업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후 동 국채발행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이자를 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b>(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기금의 부채 상환</li> </ul>
--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3~2027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통화금융기관예치
(9715-97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5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공적자금상환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화금융기관예치	43,000	28,224	-	30,108	-	1,884	6.7

### 4. 사업목적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지출한 후 '17년 말 보유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li> </ul> </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li> </ul>
---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3~2027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